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  
**2024년 제2차 사회복지직(간호사) 채용공고**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헌신·봉사의 자세로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 모집분야

채용분야	인원	지원 자격	
사회복지직 (간호사)	1	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li> <li>-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li> <li>-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li> <li>- 채용 직무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b>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직할 경력</b>이 있는 사람</li> </ul>

※ 채용인원은 요양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원채용시험 가산점수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

구분	내용	가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각 시험별 만점의 5%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필기시험 만점의 5%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시험 만점의 5%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필기시험 만점의 5%
청년인턴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청년인턴 계약종료 3년이내에 한함)	필기시험 만점의 2%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청년인턴 계약종료 3년이내에 한함)	필기시험 만점의 3%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채용인원, 응시인원에 따라 가점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2

## 임용형태 및 근무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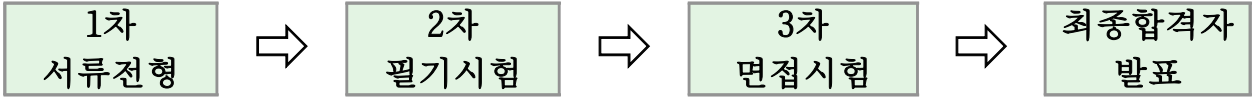
- 고용형태 : 정규직 (사회복지직 5급)
- 채용일자 : 2024. 4. 17.(수)
- 수습기간 : 2024. 4. 17.(수)~2024. 7. 13.(토)(88일)
  - ※ 수습근무평가 결과 60점 미만이면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보고 임용하지 아니함
- 근무지 : 남양주보훈요양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처우수준

구분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고정급여 (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상여금(기본급 30% 적용), 기술수당(간호사 기준), 급식보조비 등</li> <li>- 공단 보수규정 별표 6 : 경력 인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li> <li>- 사회복지직 5급 : 하한 6호봉, 상한 9호봉</li> </ul>			
	월283만원	월295만원	월301만원	월308만원
변동급여 (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li> <li>·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공휴일 교대근무자 격려금 지급(야간근로수당과 임플 동일)</li> <li>·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 월 4만원 / 60세 이상 부모 및 기타 가족 : 월 2만원 (4인 한도)</li> <li>- 20세 미만 자녀 :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월 10만원</li> </ul> </li> <li>· 명절 상여금 : 설·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10% 지급</li> <li>· 경영평가 성과급은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다음해 7월 지급</li> <li>· 선택적복지제도 입사일 기준 1년이후 지급 (1년전체 65만원, 6년 단위별 5만원 상승)</li> <li>· 설날,추석 9만원 상당, 가족친화선물 10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li> <li>· 보훈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 감면, 감정노동휴가 6개월 재직 시 연간 2일 부여</li> <li>· 기타 공단 보수규정 · 복리후생 규정 · 노사협약 등에 따라 지급</li> </ul>			

- 근무형태 (요양원 사정에 따라 직무 · 근무형태 변경 가능)
  - 간호사 - 주간근무 또는 3교대

### 3 채용일정 및 합격기준

○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별 세부 평가항목

전형구분	내용	일시	발표	합격기준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24.3.14.(목)~ 3.27.(수) 13:00	'24.3.29 (금)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시 전원 합격
필기시험	- 간호학개론 40문항 - 한국사 20문항	'24.3.30.(토)	'24.4.4 (목)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합격최저동점자 전원 합격)
면접시험	· 직무역량 면접	'24.4.5.(금)	'24.4.9. (화)	· 필기 60% + 면접 40% (+ 전형별 가점)
서류등록	-	'24.4.9.(화)~4.16.(화) 13:00		최종합격자
임용	-	'24.4.17.(수)		-

※ 상기 일정은 요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구분	평가항목
서류전형 (적부심사)	· 기본자격(자격증포함) 충족여부(공고마감일 기준) - 병원급 종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류 참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필기시험 (배점60%)	·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과락  · 총 2과목 60문항 - (전공) 간호학개론 40문항 80점 - (공통) 한국사 20문항 20점
면접시험 (배점40%)	· 면접위원 평균 원점수와 부가점수를 포함하여 60% 미만 시 과락 · 단, 원점수가 40%미만일 경우 부가점수 미적용 · 블라인드 면접(직무역량)

※ 최저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동점인 경우 전공 고득점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 4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직무능력소개서 포함) - 직무능력소개서 및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별 800자 이내 ② 채용직무 관련 필수 자격·면허증 ③ 채용직무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직무가 간호사로 표기되어야 인정)
보유자	④ 장애인증명서 ⑤ 기초수급자 증명서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⑦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⑧ 다문화가족 증명서(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⑨ 공단 청년인턴 증명서 ⑩ 취업지원증명서 (국가보훈부 및 주민센터 발급 가능)

- 서류접수 기간 내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 경력확인을 위해 직무가 간호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시 직무미표기로 불합격 처리됨을 공지드립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우 세부 직무·직위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해당 기간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
- 지원서·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성별·나이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미사용
- 증빙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스캔본, 사진 파일 등은 불인정

## 5

##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능력소개서(①) : 온라인 제출
  - <https://recruit.incruit.com/bohun> ※ 방문·우편접수 불가
- 자격요건·가산점·자격증 증빙서류(②~⑩) : 지원서 제출 시 스캔 첨부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접수기간 : '24. 3. 14.(목)~ 3. 27.(수) 13:00

## 6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합격자 발표 후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남양주보훈요양원 팩스(031-579-7070) 또는 이메일(arden@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청구기간 경과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기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제출양식 미준수·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편견 없는 채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자격증·증명서에는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등 표기가 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 요양원은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라 부당한 채용 청탁이나 압력·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른 처벌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면접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전형 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 공단 및 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각 전형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당 전형에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 인사담당(031-579-70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장